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83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838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가단695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7. 3. 22.

판결 선고 2017. 4. 5.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가단695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산시 C 전 688㎡ 및 D 답 1,12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71. 12. 3. 접수 제35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등기소 1974. 12. 19. 접수 제40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등기소 2009. 8. 3. 접수 제141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미리

판사조윤정

판사하세용